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A Study on Enhancement of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in Public Libraries

강 속 희(Sook-Hee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정책 |
| 1. 연구의 의의 | IV.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
| 2. 연구의 방법 | 1. 예산 |
| 3. 선행연구 | 2. 자료 |
| II. 장애인 현황 | 3. 장애인서비스 제공 |
| 1. 장애인 일반 현황 | 4. 편의시설 |
| 2. 장애인 정보화 현황 | 5. 웹 접근성 |
| III.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 V.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
| 1. 법 | |

초 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각종 통계데이터와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법 및 정책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장애인

ABSTRACT

Since April last year whe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ecame effective in Korea,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been obligated to provide library service to the disabled. But mos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do not and are not ready to service them.

After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sabled people and investigating current state of services for them in the public libraries of Korea by analyzing related statistics and laws, suggestions for the enhance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were proposed.

Keywords: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Disabled People

* 이 논문은 시립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시립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shkang@mail.icc.ac.kr)

• 접수일: 2009년 11월 6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의의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난 2007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등으로 장애당사자주의가 법이념화 되고 우리 나라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6년 전면 개정된 이래 「도서관법」에는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장이 추가되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도서관의 책무로 「도서관법」에 명시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립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도서관 개념이 공공도서관에 포함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서비스가 분리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1987년 특수도서관으로의 분리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발전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정하여 통합서비스를 위한 공공도서관이 신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장애인이 도서관서비스의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도서관서비스의 격차가 없어지고,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복지와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로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보격차 해소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획기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의 수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조사기준으로 실시된 장애인 및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된 법률 및 정책,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를 공공도서관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된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을 제외한 일반 공공도서관을 의미하며, 연구의 범위 역시 일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국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계기로 최근 관련법의 개정과 정책수립의 근거가 될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08 장애인 실태조사>¹⁾ - 보건복지가족부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6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²⁾ -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국의 만7~69세의 재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 기준시점은 2008년 9월 1일이다.
- <2008 전국 도서관통계조사>³⁾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8년 도서관통계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12월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전국 공공도서관 644개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2009년 6월에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일반, 어린이도서관,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6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전의 공공도서관, 즉 공공도서관 일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용하였다. 이 통계는 8개 조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특수계층서비스 영역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 수, 장애인 관련 예산 등이 본 연구의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분석에 활용되었다.
- <200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⁴⁾는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2009년 5월 발표되었다.

1) 변용찬 등,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편,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

4)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3. 선행연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이전까지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점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시각장애인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설립된 2007년을 전후하여 동센터의 운영 및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문헌들이 다소 발표되었다. 연구의 대상 역시 최근에 와서 청각장애인, 독서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동안 연구 내용이 주로 도서관측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일부나마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조사를 비롯한 이용자연구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2007년 이후에 발표된 관련 문헌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숙⁵⁾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2006년 12월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07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⁶⁾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용원⁷⁾은 국내 58개 공공도서관을 표본 추출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홈페이지 게시물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국내외의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지침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윤희윤⁸⁾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협력망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영미와 일본의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법제, 조직체계, 지원시스템 등의 정책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성일¹⁰⁾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의 9개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 및 소리도서관의 장애인 디지털정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장애인의 독서문화에 대한 욕구를 장애유형별, 연령별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디지털정보서비스 모델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정연경¹¹⁾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의 23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및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요구에 대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국

5) 이영숙,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07), pp.69-91.
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편,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
7) 조용원,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pp.167-186.
8) 윤희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pp.73-94.
9) 윤희윤,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pp.215-240.
10) 이성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장애인 디지털정보 서비스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7).
11) 정연경,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7).

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준우 등¹²⁾은 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현황과 지식정보욕구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영기, 이연옥¹³⁾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국제기준 및 외국기준을 분석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오동근, 윤수진¹⁴⁾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설치하고 있는 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구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김선호¹⁵⁾는 대구광역시의 9개 공공도서관의 참고사서를 대상으로 난독인에 대한 정보봉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북유럽 3개국의 난독인에 대한 정보봉사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실정에 맞는 난독인 정보봉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II. 장애인 현황

1.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를 15종류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장애인의 수, 증가율, 장애의 유형 및 유형별, 등급별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체자료, 각종 서비스 개발 등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가. 장애인수 및 분류

『장애인복지법』이 분류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은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서관서비스와 연관시켜볼 때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즉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도서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도서관 이용상의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을

12) 이준우 등,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서울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13) 김영기, 이연옥,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08), pp.87-108.

14) 오동근, 윤수진,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3), pp.157-179.

15)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난독인 정보봉사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183-206.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시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를 도서관 이용상의 장애 즉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중심으로 지체/뇌병변장애¹⁶⁾,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기타(내부기관의 장애, 안면장애)로 재분류하여 집계하면 <표 1>과 같다.¹⁷⁾

<표 1>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적장애	기타	계
2005년(2/4분기)	1,077,799명 (63.4%)	180,526명 (10.6%)	165,058명 (9.7%)	191,845명 (11.3%)	84,123명 (5.0%)	1,699,351명 (100%)
2008년(1/4분기)	1,351,272명 (63.2%)	220,061명 (10.3%)	222,486명 (10.4%)	237,188명 (11.1%)	106,219 (5.0%)	2,137,226명 (100%)
증가수	273,535명	39,535명	57,428명	45,343명	22,096명	437,897명
증가율*	25.4%	21.9%	34.8%	23.6%	26.3%	25.8%

* 증가율(%) = 증가수 / 2005년 장애인 수 × 100.

※ 출처 : 변용찬 등, 『2008 장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작성.

나. 도서관서비스와 장애인 특성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는 운동 및 이동상의 장애, 정보 이용상의 장애, 커뮤니케이션 상의 장애 등을 수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하여 제공하여야할 시설, 자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2008년 1/4분기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장애 유형별로 볼 때 지체/뇌병변장애인이 전체의 6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장애 11.1%, 청각/언어장애인이 10.4%, 시각장애인이 10.3%로 많으며 이들이 전체 장애인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증가율은 청각/언어장애가 34.8%로 가장 높다(표 1 참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그 동안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특수도서관에서 조차 소외되어온 지체/뇌병변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뇌병변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도서

16)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으로 지체장애를 동반하게 된다. 과거에는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 포함시켰으나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되었다.

17) 2009년 2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및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에서는 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관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외출 가능 여부는 도서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장애인 중 혼자서 외출이 가능한 장애인은 83.6%이고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16.4%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장애유형별로 볼 때, 정신적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¹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이 도서관 방문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²⁰⁾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이용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표 2〉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적장애	기타	계
예(%)	85.5%	85.3%	91.4%	58.9%	87.0%	83.6%
아니오(%)	14.5%	14.7%	8.6%	41.1%	13.0%	16.4%
전국추정수(명)	1,351,272	220,061	222,486	237,188	106,219	2,137,226

※ 출처 : 변용찬 등,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257의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출.

장애인보조기구 중 정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의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들 보조기구는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보조기구이다.

〈표 3〉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장애인 중 정보활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많지 않다. 청각장애인 중 12.0%가 TV 자막수신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5% 이상의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시력보조기(6.6%), 화면확대기(5.5%),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상전화기(6.0%), TV 자막수신기(12.0%),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기(5.3%) 정도이다. 그러나 필요 보조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저조하여 우리 나라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소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보활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특수 마우스/키보드, 음성인식장치, 시각장애인의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의 골도전화기, 지적장애인의 인텔리키와 터치모니터 등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0%로 산출되어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18) 변용찬 등, 전계서, p.257.

19)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인 중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한 장애인이 91.6%인 반면, 뇌병변장애인은 54.0%만이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상계서).

20) 상계서, p.259.

〈표 3〉 정보활용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소지 현황²¹⁾

	장애인보조기구	소지비율(%)	필요비율(%)	소지비율/필요비율(%)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특수키보드/마우스	0.0	0.2	0
	단어예측장치	-	-	-
	음성인식장치	-	0.1	0
시각장애	저시력보조기	2.2	6.6	33.3
	스크린리더	0.8	1.8	44.4
	화면확대기	1.9	5.5	34.5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0.9	1.7	52.9
	점자프린트	-	0.4	0
청각장애	화상전화기	3.3	6.0	55
	골도전화기	-	0.8	0
	문자전화기	1.8	3.8	47.4
	문자송수신기	0.9	1.6	56.3
	음성증폭기	0.2	2.9	6.9
	인공와우	1.9	2.6	73.1
	TV 자막수신기	5.6	12.0	46.7
언어장애	의사소통보조기	2.8	5.3	52.8
지적장애	인텔리키	-	0.7	0
	터치모니터	-	1.7	0

※ 출처 : 변용찬 등,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p.221-222.

2. 장애인 정보화 현황

본 장에서는 각종 통계를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정도, 대체자료 활용과 관련된 점자해독 및 수화 사용능력, 전자정보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격차 지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 및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8년 1/4분기 현재 미취학자를 제외한 우리 나라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무학 16.5%, 초등학교 33.0%, 중학교 15.9%, 고등학교 24.4%, 대학 이상 10.2%로 2005년의 조사결과²²⁾와 유사하다.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49.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학의 비율은 청각장애가 23.6%로 가장 높다.²³⁾ 2005년 인구총조사²⁴⁾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는 무학 4.9%, 초등학교 10.4%, 중학교 10.4%, 고등학교 37.3%, 대학 이상 37.0%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25.7%인

21) 장애인보조기구 중 이동관련 보조기구 및 개인적으로 소지해야할 보조기구 등을 제외한 정보활용과 관련된 보조기구만을 선별하여 소지현황을 추출한 것이다.

22) 2005년 당시 우리 나라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무학 16.5%, 초등학교 30.2%, 중학교 16.7%, 고등학교 26.0%, 대학 이상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상계서, p.119.

24)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http://www.kosis.kr> [인용 2009. 9. 25].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전체 국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고려해야할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 방법 등의 특성을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은 96.8%가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2%가 시야결손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96.6%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며 1%는 배우는 중에 있고,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 가능정도가 낮은 이유는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자인 경우 묵자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전맹 등의 경우에는 점자습득이 필요하나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그리고 점자해독능력에 따라 제공 정보의 형태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각장애인은 99.4%가 청력장애를 입고 있으며 0.6%만이 평형기능장애를 입고 있다. 이들 중 85.4%가 '말'을 의사소통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5.6%에 불과하다. 구화(입모양)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4.1%, 몸짓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3.3%, 필담(글로쓰기)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1.1%이다. 즉 청각장애인 중 대부분은 수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²⁶⁾

우리 나라 언어장애인의 장애형태는 말을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장애가 44.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9.7%, 말더듬이 15.4%, 언어장애·실어증이 13.2%, 음성장애가 7.3%의 순이다. 우리 나라 언어장애인 중 말을 의사소통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67.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몸짓(14.7%), 수화(6.1%), 구화(5.9%), 필담(5.7%) 순으로 많다.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언어장애인은 수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²⁷⁾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수화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은 극히 일부 청각/언어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지수²⁸⁾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정보격차지수 및 정보불평등계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격차지수 (점)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	대비수준 (%)	격차지수 (점)	대비수준 (%)
접근	27.0	73.0	22.4	77.6	14.6	85.4	11.2	88.8	7.4	92.6
역량	58.9	41.1	50.0	50.5	39.0	61.0	36.6	63.4	34.0	66.0
양적활용	51.1	48.9	41.4	58.6	32.2	67.8	31.9	68.1	29.5	70.5
질적활용	54.5	45.5	46.9	53.1	38.0	62.0	36.7	63.3	35.5	64.5
종합	42.5	57.5	34.8	65.2	26.1	73.9	24.0	76.0	21.2	78.8
정보불평등계수**	0.485		0.414		0.376		0.365		0.330	

* 대비수준 : 일반국민 대비수준. ** 정보불평등계수는 종합지수 기준임.

※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p.146, p.151.

25) 변용찬 등, 전계서, p.143.

26) 상계서, p.148.

27) 상계서, p.152.

2008년 9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한 <2008 장애인정보격차 실태조사>²⁹⁾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장애인의 정보격차 지수의 변화 추이는 접근·역량·활용 모든 부문에서 매년 감소하여 일반국민과 장애인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57.5%에 불과하였던 것이 4년간 21.3% 증가하여 2008년에는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수준은 78.8%에 달하였다. 또한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 계층내 구성원들간 정보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정보불평등계수³⁰⁾가 감소추세로 나타나 장애인 계층내 정보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특히 접근 부문의 격차지수는 7.4점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의 92.6% 수준으로 장애인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역량 부문과 질적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 대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질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본 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법」 및 관련 법률의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내용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³¹⁾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³²⁾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참고 하고자 한다.

1. 법

가.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등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히 제8장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에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설, 도서관

28)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 장애인 간 격차를 산출한 것으로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2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게서.

30) 정보불평등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큼.

3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서울: 동위원회, 2008).

3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서울: 동위원회, 2008).

자료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무관하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과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대체자료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납본조항(제20조 2항)이 신설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독서, 학습, 직업 및 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있어, 저작권 보상금 보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제3항 신설). 법 개정에 의하여 출판사들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체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개정된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용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2009. 9. 개정)은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편의시설 및 대체자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 또한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와 관련된 별표2(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서도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인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³³⁾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로, ‘정보격차’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전자정보 및 정보통신분야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중 온라인정보서비스 및 웹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⁴⁾

33) 1995년 제정되어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법률명을 변경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법률명 변경 및 전면 개정과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폐지되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제정·공포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중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제18조)에 관한 조항으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로 「편의증진법」 제7조 각 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1항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적용)에 의하여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제외된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함께 2010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법 제21조와 관련된 시행령의 별표 3과 4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예술기관의 범주로 취급하고 있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역시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하겠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시설의 규모나 신축시기에 관계없이 동법이 시행된 후 2년 내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다.³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올해 4월 11일 이후 신축·개축·증축한 시설물만 적용되는데 이것은 곧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시점 이후에 신축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표 5〉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로	장애인용차역	주출입구차이제	출입구(문)	복도	계단능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파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열석	접수·대접대	매표·판매·음료대	입부 등 환계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 출처 : 「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별표2.

- 34)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 35)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와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별표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표 6〉 공공도서관의 비치용품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보기기를 포함한다)

※ 출처 : 『편의증진법』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등 5종류로 대분류하고, 각 종류별 세부항목은 총 18종류로 소분류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45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그리고 비치용품을 규정하고 있다(표 5, 표 6 참조).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등의 안내시설과 일부 위생시설, 기타 시설 등이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전송, 복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로서 기존의 저작권법은 복제, 배포할 수 있는 형식을 점자 등으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공정이용에 제약을 두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항인 제 33조 2항이 2009년 3월 일부 개정되었다. 즉 시각장애인 등³⁶⁾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등의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되어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제14조 2항)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은 네 가지로, 첫째,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둘째,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넷째,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등이다.

2. 정책

『도서관법』은 동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36)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등'이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2년 8월, 문화관광부가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03~'11)」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소외가 심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정책과제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영역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영역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및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 확대, 도서관 시설 및 대체자료의 장애유형별 기준 제정,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확대,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연수 강화, '보이스 아이' 바코드 보급도서의 확대 및 표준화,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홈페이지확대·개편, 전국도서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지원 및 기능 강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정보자료실 설치 및 운영 확대 등³⁷⁾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영역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실용 위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추진전략으로 장애인을 위한 IT 보조기기 설치,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정보접근권 강화, 실무형 정보이용 능력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⁸⁾

이상과 같이 「도서관발전종합5개년계획, 2009-2013」 중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계획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적인 중점사업이나 각각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원 조달 계획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의 전체 재정투자는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가 각각 129,398백만원과 413,435백만원으로 총 542,833백만원이다. 이 중 80.2%(435,465백만원)가 공공도서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영역에 투자³⁹⁾되고, 장애인

3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전계서, pp.94-97.

38) 상계서, pp.101-103.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영역⁴⁰⁾에는 총 예산의 2.1%에 불과한 11,66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표 7〉 2009년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사업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단위 : 백만원)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서	사업내용	투자계획			
			국고	기금	지방비	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대체자료제작 및 보급	200			200
		장애인서비스교육프로그램운영	30			30
		장애인협력망워크숍 개최	14			14
		프로그램개발-사이버교육과정	32			32
		정보자료실 운영/전국확산	180			180
		계	456	0		456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정보접근 기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조정과	정보격차 해소 도서관정보서비스모델 개발·보급	92		21	113
		계	92		21	113
		총계	548	0	21	569

※ 출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 p.103, p.109에서 발췌, 제작성.

중앙행정기관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영역의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및 전국 확산사업 등을 세부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자계획은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200백만원)을 포함하여 국고 예산 총 456백만원이다. 또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접근기회 제공 과제의 세부과제로 정보격차 해소 도서관정보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계획은 국고 예산 92백만원과 지방비 2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표 7 참조).

협조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사업계획에서 빠져 있다.⁴¹⁾ 결국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569백만원에 그쳐, 25개 중앙행정부처 예산 총액(129,398백만원)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시·도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⁴²⁾

39) 이 영역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확충,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인력 확보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상계서, p.16).

40)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의 개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령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기회 제공, 실용주의 맞춤형 정보활용교육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한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 전계서, p.24].

41) 상계서, pp.98-111.

〈표 8〉 2009년도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사업 시행계획 - 각시·도

(단위 : 백만원)

시·도 (담당부서)	세부추진과제	사업내용	투자계획			
			국고	기금	지방비	계
대 구 (문화예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시설개선			27	27
		시각장애실운영			16	16
		낭독아카데미운영			4	4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정보접근 기회제공	콘텐츠확충			20	20
환경개선				100	100	
인 천 (시립도서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시설개선			25	25
		대체자료구입			25	25
광 주 (문화예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광주점자도서관지원*				
		대체자료구입			42.4	42.4
		방문대출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대 전 (한밭도서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시각장애실운영			4	4
		대체자료구입			7.2	7.2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정보접근 기회제공	콘텐츠확충			15	15
		전용공간구축·운영	70		30	100
		디지털정보센터운영			1.2	1.2
		학술지원문정보이용료			7.9	7.9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30	30		
울 산 (문화예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택배,방문,우편대출				
		독서교실운영				
		홈페이지제작(웹접근성향상)			23	23
		콘텐츠확충				
		특수자료통합목록구축				
경기도 (도서관정책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이동도서관/순회문고				
		무료택배서비스				
		웹서비스자료확충			79	79
전북 (문화예술과)	정보활용교육의강화	특수자료통합목록구축				
		소외계층정보활용교육			10	10
전남 (문화예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대체자료구입			45	45
		이동도서관/책배달서비스/순회 문고			26	26
제주 (문화정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장애인택배서비스 운영			28	28
		책임이주는 도서관			14	14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정보접근 기회제공	콘텐츠확충			20	20
		전산개발비			30	30
총 계			70		629.7	699.7

※ 출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 발췌, 재작성.

42) 장애인도서관지원 사업, 정보활용교육사업 중 장애인과 무관한 사업, 비예산책정 사업은 제외하였음.

부산광역시, 충북, 충남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포함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북, 경남은 장애인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즉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식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이 없다고 하겠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시·도별 재정투자 예산은 699.7백만원으로 시·도별 2009년도 총예산 413,435백만원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9개 시·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대체자료 및 콘텐츠 확충 사업과 택배, 방문 및 우편대출, 순회문고 및 이동문고 운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IV.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본 장의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중 예산, 자료, 서비스의 현황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개된 2008년도 공공도서관(일반)의 특수계층서비스/장애인관련예산과 장애인용 특수자료/장애인서비스 이용자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⁴³⁾

1. 예산

2008년 1년 동안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한 공공도서관은 전체 602개관 중 130개관으로 전체의 21.5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서비스가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도서관 규모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균예산액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장애인서비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130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서비스 예산이 도서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았다(표 9 참조).

2008년 1년 동안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지출한 공공도서관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자료구입비와 편의시설에 예산을 지출한 도서관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자료구입비를 지출한 도서관이 48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7.79%, 편의시설에 예산을 지출한 도서관이 45개관으로

4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 [인용 2009. 9. 1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08년 데이터는 조사과정에서의 오류데이터를 수정하여 9월 4일 갱신되었다. 그 후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데이터는 해당도서관과의 전화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시 수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1개 도서관(사랑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도서관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도서관(일반)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이 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602개이다.

7.48%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서비스 예산 중 인건비를 지출한 공공도서관은 20개관(3.32%), 자료 제작비를 지출한 도서관은 10개관(1.66%), 보조공학기 구입 및 보수·유지비를 지출한 도서관은 13개관(2.16%)으로 장애인서비스 예산 중 인건비, 자료제작비, 보조공학기 등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출한 도서관은 매우 드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9〉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예산

		도서관수 (관)	전체공공도서관(602개) 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산집행도서관(130개) 에서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서비스 예산 지출도서관	자료구입비	48	7.97	36.92
	편의시설	45	7.48	34.62
	인건비	20	3.32	15.38
	보조공학기	13	2.16	10.00
	자료제작비	10	1.66	7.69
	교통비	10	1.66	7.69
	기타	49	8.14	37.69
	소계	130	21.59	100
장애인서비스 예산 없음		472	78.41	
총 계		602	100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특수계층서비스, 장애인관련예산, 공공도서관(일반), 2008년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예산이 도서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장애인예산/도서관총예산×100)을 산출한 결과, 장애인서비스 예산을 집행한 130개 도서관 중 절반 정도가 0.5%미만이었다. 그리고 70% 정도의 도서관이 1%미만이며, 78.95%의 도서관이 2%미만의 예산을 장애인서비스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예산을 집행한 130개 공공도서관마저도 대부분 1%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장애인서비스 예산이 총예산의 5%이상인 공공도서관은 전체 공공도서관의 0.5%에 지니지 않는 3개관(44)으로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교

〈표 10〉 도서관 총예산에 대한 장애인서비스 예산의 비율

		도서관수 (관)	전체공공도서관(602개) 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산집행도서관(130개) 에서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서비스 예산지출도서관	5%이상	3	0.50	2.31
	5%미만 - 2%이상	9	1.50	6.92
	2%미만 - 1%이상	13	2.16	10.00
	1%미만 - 0.5%이상	26	4.32	20.00
	0.5%미만	79	13.12	60.77
	소계	130	21.59	100
장애인서비스 예산 없음		472	78.41	
총 계		602	100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특수계층서비스, 장애인관련예산, 공공도서관(일반), 2008년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적 적극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도서관은 이들 3개 도서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200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사회적 관심이 큰 해였음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특수자료의 구비, 편의시설의 확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법 시행과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

2008년 말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91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31.73%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중 2/3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전혀 소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료의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도서(인쇄) 형태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47개관(24.42%), 비도서 형태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25개관(20.7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특수자료의 입수 및 제작이 시급한 실정이다(표 11 참조).

〈표 11〉 장애인용 특수자료 소장 공공도서관수

	공공도서관 수(관)	비율(%)
전체 공공도서관 수	602	100
특수자료 소장	191	31.73
특수자료 비소장	411	68.27
도서(인쇄)자료 소장	147	24.42
도서(인쇄)자료 비소장	455	75.58
비도서자료 소장	125	20.76
비도서자료 비소장	477	79.24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특수계층서비스,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장애인서비스 이용자수, 공공도서관(일반), 2008년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장애인용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191개 공공도서관의 특수자료 소장량을 분석해 본 결과(표 12 참조),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중 10,000건 이상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6개관(1.00%), 5,000건 이상 소장 공공도서관은 총 14개관(2.33%)이다. 1,000건 이상 5,000건 미만 소장 공공도서관 30개관(4.98%), 100건 이상 1,000건 미만 소장 공공도서관 81개관(13.46%), 100건 미만 소장 공공도서관 66개관(10.96%)으로 1,000건 미만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147개관으로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76.56%에 달하여 공공도서관

44) 해밀도서관, 남산도서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해밀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된 도서관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설립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2008년 6월 개관하였다.

이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1,000건 미만의 소장에 그쳐 소장 특수자료 역시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특수자료를 5,000건 이상 소장하고 있는 14개 공공도서관의 소재지역을 살펴 보면 10,000건 이상 소장 공공도서관 6개관⁴⁵⁾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5,000건 이상 소장하고 있는 14개 도서관으로 범위를 넓혀보면⁴⁶⁾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경기, 전북, 충북 등이 추가되어 광역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망 구축시 지역 중심도서관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표 12〉 공공도서관의 특수자료 소장

		도서(인쇄)자료		비도서자료		특수자료 합계	
		도서관수(관)	비율(%)	도서관수(관)	비율(%)	도서관수(관)	비율(%)
특수자료 소장	10000건 이상	0	0	6	1.00	6	1.00
	10000건미만 -5000건이상	2	0.33	5	0.83	8	1.33
	5000건미만 -1000건이상	20	3.32	15	2.49	30	4.98
	1000건미만 -100건이상	67	11.13	56	9.30	81	13.46
	100건미만	58	9.64	43	7.14	66	10.96
	소계	147	24.42	125	20.76	191	31.73
특수자료 미소장		455	75.58	477	79.24	411	68.27
총 계		602	100	602	100	602	100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특수계층서비스,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장애인서비스 이용자수, 공공도서관(일반), 2008년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3. 장애인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수 및 이용건수가 1이상인 공공도서관을 분석하였다(표 13 참조).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49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41.36%이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는 방문대출이 가장 많았으나 122개관, 20.27%에 불과하였으며, 택배서비스(74개관, 12.29%), 정보검색(73개관, 12.13%), 기타(47개관, 7.81%), 확대

45)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31,995건),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27,737건),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22,764건),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17,725건), 마포평생학습관(15,425건),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13,974건).

46) 계양도서관(9,103), 화도진도서관(8,872건), 광양시립중앙도서관(6,547건), 울산동부도서관(6,334건), 울주도서관(6,025건), 경기도립중앙도서관(5,524건), 완주군립도서관(5,212건), 제천시립도서관(5,055건).

문자서비스(25개관, 4.15%), 우편대출(18개관, 2.99%), 상호대차(17개관, 2.82%), 대면낭독(16개관, 2.66%), 녹음(9개관, 1.50%), 점역(5개관, 0.83%), 수화통역(3개관, 0.50%)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서비스는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3〉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도서관수 (관)	전 체	장애인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602개)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공도서관(249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문대출	122	49.00
	우편대출	18	7.23
	택배서비스	74	29.72
	대면낭독	16	6.43
	수화통역	3	1.20
	정보검색	73	29.32
	녹음	9	3.61
	점역	5	2.01
	확대문자서비스	25	10.04
	상호대차	17	6.83
	기타	47	18.88
	소계	249	100
장애인서비스 미제공	353	58.64	
총 계	602	100	

※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특수계층서비스, 공공도서관(일반), 2008년, 장애인용 특수자료수/장애인서비스의 장애인서비스 건수 항목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4. 편의시설

본 연구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공공도서관으로 보고 해석하였으며⁴⁷⁾ 편의상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200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근거로 2008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전체와 비교하여 다소나마 높은 편이다(표 14 참조). 그러나 정비대상시설인 공공도서관은 설치율 82.2%, 적정설치율⁴⁸⁾ 62.2%

47) 이러한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주관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하여 대학, 연구기관, 복지시설 등에 부속된 도서관은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을 수록한 파일을 전송받아 검토한 결과, ‘공공도서관’은 바닥면적 1,000㎡미만의 공공도서관이며, ‘도서관’은 바닥면적 1,000㎡이상의 공공도서관임을 알 수 있었다.

48) 적정설치율은 4점(적정)으로 평가된 것을 말하며, 설치율은 2점이상 즉, 2점(미흡)·3점(보통)·4점(적정)으로 평가된 것을 합한 설치율을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 전계서, p.119).

이며 도서관은 설치율 88.2%, 적정설치율은 66.5%로 장애인의 도서관방문을 위해서는 크게 미비하다고 하겠다. 공공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접근로가 긴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나 주출입구 접근로, 안전보행로, 내부시설의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위생시설 중 대변기, 기타 시설의 관람석·열람석 등의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⁴⁹⁾

〈표 14〉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편의시설	전 체*		공공도서관		도서관		
	설치율	적정설치율	설치율	적정설치율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82.9	60.9	84.9	64.4	80.7	57.1
	주차구역	67.4	50.8	73.1	55.0	86.9	62.5
	높이차이제거	71.7	43.9	89.9	54.4	96.2	63.7
내부	출입구(문)	86.3	56.5	94.8	73.9	97.0	78.1
	복도	89.9	71.5	92.7	71.8	96.1	75.8
	계단	79.1	57.5	81.0	57.7	86.2	62.5
	경사로	87.6	79.9	85.6	77.4	90.0	80.5
	승강기	87.5	79.8	88.2	86.6	94.0	84.9
	대변기	55.2	33.8	74.2	47.8	81.7	53.7
위생	소변기	56.6	42.8			66.0	49.0
	세면대	79.7	33.5			89.9	39.7
	욕실	78.3	60.9				
	샤워실	78.1	57.6				
안내	점자블록	50.6	27.7	72.6	45.2		
	유도·안내설비	24.8	16.0				
	경보·피난설비	68.1	23.9				
기타	객실침실	63.0	44.7				
	관람·열람석	80.6	66.6	77.4	57.7	81.0	60.1
	접수작업대	79.7	50.4				
	매표소 등	81.2	71.7				
계	77.5	55.8	82.7	62.3	88.2	66.5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빈칸은 해당건물유형의 설치의무편의시설이 아님.
- 전체*는 조사대상이 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전체를 말함.
- 대상건물수 :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전체 107,730, 공공도서관 124, 도서관 264.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 중 대다수(83.6%)가 혼자 외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편의시설의 확충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상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등의 안내시설과 일부 위생시설, 기타 시설 등

49) 상계서, pp.129-130.

이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표 5 참조).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권장시설이 아닌 의무시설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웹사이트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플래시, 이미지, ActiveX 컨트롤과 같은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특히 장애인들의 접근 환경이 나쁜 편이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W3C에서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⁵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의 2008년 장애인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국내 90만여개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사이트 수는 공공기관 수십여 곳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서관으로 국회도서관이 유일하게 A를 받았고 국가전자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은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⁵¹⁾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는 2008년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도서관 웹사이트를 50개관으로 잡고 있으며, 2009년에는 150개관으로, 2013년에는 1,000개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²⁾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각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평가 대상에 포함 된 적이 없다. 결국 전국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웹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 담당자조차도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웹 접근성 평가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전화 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V.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2008년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요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0)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홈페이지, <<http://www.ableforum.com>> [인용 2009. 9. 16].

51)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 [인용 2009. 9. 16].

5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전제서, p.108.

먼저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1년 동안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한 공공도서관은 전체 602개관 중 130개관으로 전체의 21.59%에 불과하다. 이 중 자료구입비를 지출한 도서관이 48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7.79%, 편의시설에 예산을 지출한 도서관이 45개관으로 7.48%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예산이 도서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결과,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예산을 집행한 130개 공공도서관마저도 대부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2008년 말 현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91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31.73%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중 2/3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전혀 소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1,000건 미만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147개관으로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이 1,000건 미만의 소장에 그쳐 소장 특수자료 역시 미비하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특수자료를 새로 입수하거나 제작하여야 할 실정이다.
- 장애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49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41.36%이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는 방문대출이 가장 많았으나 122개관, 20.27%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서비스는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전체와 비교하여 다소나마 높은 편이기는 하나 적정설치율이 낮아 장애인의 도서관방문을 위해서는 크게 미비하다. 장애인 중 대다수(83.6%)가 혼자 외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편의시설의 확충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및 웹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2008년까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웹접근성 평가의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웹접근성이 의무화되는 2010년을 앞두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가 급선무이다.

이상과 같은 실태를 통하여 예산, 시설, 자료, 서비스 등 공공도서관서비스 전반에 걸쳐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도서관만이 빈약한 수의 대체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선행연구에서 변함없이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그 동안 특수도서관 관중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봉사해온 점자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도

특수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장애인서비스를 특수도서관 영역으로 분리하던 정책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통합한다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장애인도서관의 신축은 중단되고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⁵³⁾ 그리고 200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처음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법 시행과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2009년 시행계획 역시 공공도서관의 수적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소외되어 온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는 여전히 중점사업에서 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실태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 살펴 본 장애인의 특성 및 관련법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분리에서 통합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이용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용자연구를 통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장애유형별, 등급별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나라 장애인은 지체/뇌병변장애가 전체의 63.2%로 가장 많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뇌병변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로 방문대출, 택배 및 우편대출 등의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서 외출이 가능한 장애인이 전체의 83.6%로,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보다 훨씬 많으며 장애유형별로 볼 때, 정신적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이 도서관 방문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이용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중 정보활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많지 않으나 필요 보조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특수 마우스/키보드, 음성인식장치, 시각장애인의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의 골도전화기, 지적장애인의 인텔리키와 터치모니터 등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으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비치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전체 국민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또한 시각장애인 중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하며, 청각/언어장애인 중 대부분이 말을 의사소통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점자나 수화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은 극히 일부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3)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연감 2008(서울 : 동협회, 2008), p.58.

둘째, 웹 접근성을 높이고 대체자료를 전자정보화 하여 온라인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정보에 대한 원격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음성변환기술, 점역기술, 문자인식 기술 및 다양한 보조장치 등의 발전은 제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의 중요한 채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소장 대체자료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웹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 웹사이트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용 정보활용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일반인들 중심으로 제작되어 온 온라인 목록, 색인, 원문 데이터베이스, 백과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도서관 안내정보 등 각종 콘텐츠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포맷되고 설계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홍보하고 장애인들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체자료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대체자료의 소장량이 극히 저조하다. 대체자료는 제작기간이 길고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반인을 위한 자료에 비하여 제작, 생산의 과정이 복잡하고 대체자료의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대체자료부족 및 중복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관련법의 개정 및 정책수립, 협력망구축 등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대체자료의 생산 주체가 되어 협력망의 센터로서 개별 공공도서관의 대체자료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체자료 생산에 우호적으로 개정된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 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온 장애인서비스를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통합하기 위한 독립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서비스 사업에 재정을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 정보격차 해소, 편의증진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정보화 및 편의시설증진을 위한 기금이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증진, 정보보조기기 확충, 웹접근성 향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간, 기금운영기관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련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조항(『도서관법』제44조)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기기, 대체자료, 전담사서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편의증진법』은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공공도서관을 정비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등의 안내시설과 일부 위생시설, 기타 시설 등을 의무설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의무설치대상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을 공공도서관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십 년 동안 지적되어 온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소외문제가 해소되고 장애인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도서관발전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장애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대체자료 및 장비의 연구, 제작, 배포, 보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서비스를 공공도서관의 주요 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이용자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발 등 전문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